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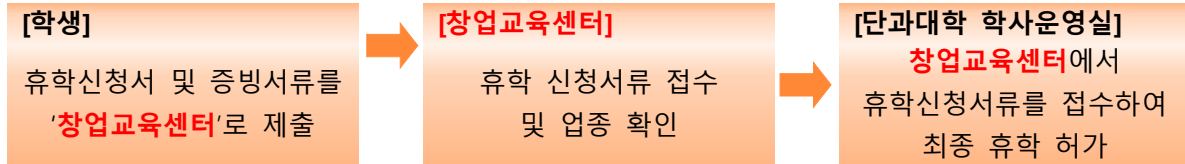
# 2023년도 1학기 창업휴학 신청 안내

1. 창업휴학 관련 규정: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67조3

2. 창업휴학 절차

가. 창업을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**창업교육센터**를 경유하여 휴학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소속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함

나. 프로세스



3. 창업휴학 가능 기간

- ▶ 대학(원) 생이 창업을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'일반휴학'이 아닌 '별도휴학'으로 처리
- ▶ 재학기간 중 통산 4학기까지 휴학 가능
  - ※ 1회에 1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하며, 1학기를 초과하여 휴학 시 연장원을 제출 (연장 시에도 최초 휴학신청과 절차는 동일함)

4. 접수방법 및 제출 서류

가. 접수처: 창업기술원 **창업교육센터**(신공학관 7101호) / 방문접수

나. 제출서류

- 창업휴학원(본교양식) 1부.
- 창업 아이템 요약서(본교양식) 1부.
- 창업 관련 증빙서류: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 등 창업 사실 확인 가능한 서류 중 택1

다. 신청기간: 일반휴학 기간과 동일.

라. 등록금 반환/징수(공제) 기준

반환사유 발생일	반환 금액	징수(공제) 금액	비고
~ 학기개시 14일	전액	-	
학기개시일 ~ 30일	5/6 반환	1/6 징수(공제)	
학기개시 31일 ~ 60일	2/3 반환	1/3 징수(공제)	
학기개시 61일 ~ 90일	1/2 반환	1/2 징수(공제)	
학기개시 90일 이후	미반환	전액	

5. 기타 사항

가. 창업휴학 허가 제외 업종

금융 및 부동산, 부동산업, 숙박 및 음식점업(호텔업,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), 무도장 운영업,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, 기타 캠블링 및 베틀업, 기타 개인 서비스업(산업용 세탁업은 제외),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

나. 교육부 지침에 의거, 창업휴학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 할 예정이며, 현장점검 불응 또는 현장점검 결과 창업휴학 신청서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, 승인된 창업휴학을 취소할 수 있음.

**다. '등록금 반환/징수(공제) 기준'에 따른 반환 또는 징수(공제) 대상임**